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4. 4. 12.

발의의원 : 김지만, 권기훈,
김대현, 김재우,
류종우, 육정미,
이재숙, 이태손
조경구, 하병문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 (안 제3조)

나. 부칙(조례 제5293호, 2019.7.10.) 제2조(단위부담금의 특례)의 적용 기
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 연장

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호”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을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제9호”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 제16조제4항”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1. 인구 10만명 미만의 군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2. 발전소·변전소·소각장·쓰레기처리시설물·정수장·하수처리장·배수펌프장
3.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물
4.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너비 20

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하여 있으며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형마트 :”를 “대형마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합병원 :”을 “종합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반업무시설 :”을 “일반업무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유흥주점 :”을 “유흥주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예식장 :”을 “예식장:”으로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조의3제3항”을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 ”으로 하고, 제1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일할”을 “일 단위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분기1회이상”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5퍼센트이내”를 “5퍼센트 이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퍼센트이내”를 “3퍼센트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근버스운영 :”을 “통근버스운영:”으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조례 제5293호(2019. 7. 10.)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 「대

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하고, “2024년 7월31일”을 “2027년 7월 31일”로 하며,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시교통정비 촉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 제24조제7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p> <p>2. ~ 4. (생략)</p> <p>5.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p>	<p>제1조(목적) ----- 「<u>도시교통정비 촉진법</u>」 제3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호----- ----- ----- <u>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u>----- ----- -----.</p> <p>제2조(정의) ----- ----- <u>각 호</u>----- -----.</p> <p>1. ----- 「<u>도시교통정비 촉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 ----- 「<u>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p>

점, 대형마트 : 10.92

2. 삭 제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1.92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4. 일반업무시설 : 1.38

5.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 3.84

6. 집회장 중 예식장 : 6.24

제4조의3(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

-- 대형마트: ----

3. ----- 종합병원: -----

4. 일반업무시설: ---

5. ----- 유흥주점: ----

6. ----- 예식장: ----

제4조의3(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

-----.

1. ----- 이상 : --

--

2. ----- 이
상 : -----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
게 위임한다.

1. ~ 5. (생략)

부칙

<조례 제5293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단위부담금의 특례) 대구광
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조례에 따라 조성한 종합유
통단지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
4년 7월31일까지 규칙 별표3을
적용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부칙

<조례 제5293호, 2019.7.10.>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단위부담금의 특례) 「대구
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202
7년 7월 31일-----별표 3-
-----.

관 계 법 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밖에 교통량이 현저히 적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18. (생략)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 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구 분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85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